



▲이종연변호사가 『보상문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93. 7. 12 위싱턴한국일보

“정신대는 비인도적 범죄행위”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 『공개토론회』

일본이 태평양전쟁 당시 가장 잔혹하게 저지른 『정신대』 사건은 국제법상 전쟁범죄 또는 비인도적 범죄행위로 간주돼,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추궁은 시효의 한계가 없으며 피해국인 한국을 포함 세계 모든 나라가 처벌권을 갖게 되는 『보편적 관할권(Universal Jurisdiction)』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지역 정신대문제 대책위원회(이하 정대위)가 7일 우래옥에서 개최한 『정신대 문제 공개토론회』에서 박원순변호사(국제인권)는 “정신대는 인권유린 범죄일뿐 아니라 여성의 유린을 통한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민족말살범죄로 볼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민사·형사적 책임과 함께 박물관·기념탑 건립, 교과서에

내용 게재등 후세에 사실을 알릴 책임까지 추궁할수 있는 것이 국제법상 배상의 한 범주에 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종연변호사는 『보상문제』에 대해 “한일 기본조약(1965년)에 의해 정신대 문제는 해결됐다고 일본은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민사상 청구권일 뿐이지, 인권유린에 대해 국제법이 인정한 형사권